

의안번호	제 378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4월 18일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
발 의 자 : 연철흙, 임희무, 엄재창,
김영주, 윤은희, 최광옥,
이의영

1. 제정이유

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
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지
원으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
교육훈련을 통해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(안 제3조~제4조)
- 나. 충청북도의 지도·감독 (안 제5조)
- 다.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 등 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(제정)

5. 관계법령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 (이하 “방범대” 라 한다)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.
2. “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” (이하 “연합회” 라 한다)란 도내 시군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 방범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
2. 범죄예방캠페인 등 공익사업
3. 자율방범대원 교육사업

제4조(지원범위 등)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·훈련,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5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대원 또는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·감독을 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해마다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관계기관과 협력)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7조(표창) 도지사는 범죤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
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와 모범대원 등에게
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연합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
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
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·지원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2.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
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6.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
7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8.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
9.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
10.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
11.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
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13.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
14.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방범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범죄예방 등 캠페인 등 공익사업, 자율방범대원 교육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 지원대상
- 안 제4조 지원범위 (장소제공, 교육, 훈련, 표창 등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 요인: 자율방범연합회 공익캠페인, 교육 등
- 나. 추계의 전제: 수시
- 다. 추계결과 : '16년도부터 향후 5년간 45,000천원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 추계서 : 붙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6년도)	2차년도 (2017년도)	3차년도 (2018년도)	4차년도 (2019년도)	5차년도 (2020년도)
세 출	45,000	9,000	9,000	9,000	9,000	9,000

6. 작성자 : 연철흠 의원